

**2006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7. 1

**중 소 기 업 청
기 업 협 력 팀**

목 차

I .조사개요	1
II .조사결과 분석	2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 현황	2
2. 위탁기업의 법규사항 준수여부	4
3. 납품단가 관련 조사결과	6
<참고> 05년 - 06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	11
III.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	12
1. 실태조사 관련 개선과제	12
2. 향후 조치계획	13
< 불 임 >	
1.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현황	
2. 납품대금 이외 준수사항 위반현황	
3. 법규 위반기업 명단	
4. 납품단가 변동현황 조사결과 분석자료	
5. 수탁기업 설문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결제조건,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여 거래관행 개선 유도
 - 법규사항 외에 자동차·전자업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변동 현황을 조사하여 공정한 납품단가결정 분위기 조성
-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1조~제27조, 제40조

□ 조사기간 : 06.6월 ~ 11월(위탁기업 : 상반기, 수탁기업 : 하반기)

□ 조사대상 : 총 2,626개사

- 위탁기업 : 매출액 300억원* 이상 960개사
- * 96년부터 위탁기업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300억원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 수탁기업 : 위탁기업과 거래가 있는 1,621개사(06년 신규조사)
- 원자재가격 변동 조사 : 원자재 구입 중소기업 45개사

□ 조사방법

- 조사기업에 조사계획을 사전통보하여 자발적 시정을 유도
 - 온라인 서면조사(인터넷 시스템 구축)와 현장조사 병행
- * 온라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600개사(수·위탁 각 300개)를 선정, 현장조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현황 : 법정기간 60일 준수여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
- 대금결제 조건, 약정서 미교부 등 법규사항 준수 여부
- 자동차·전자부품 제조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납품단가 변동현황
-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반영현황 등

II.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 현황

□ 납품대금 결제방식

- 매출액 300억원 이상 위탁기업의 현금성결제 비중은 어음 대체결제 감소에 따라 05년 대비 6%p 감소
 - 대기기업의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에 기인
 - * 06년부터 대기기업의 어음대체결제 시 법인세액 감면제도 폐지(중소기업간 어음대체결제 시에는 세제혜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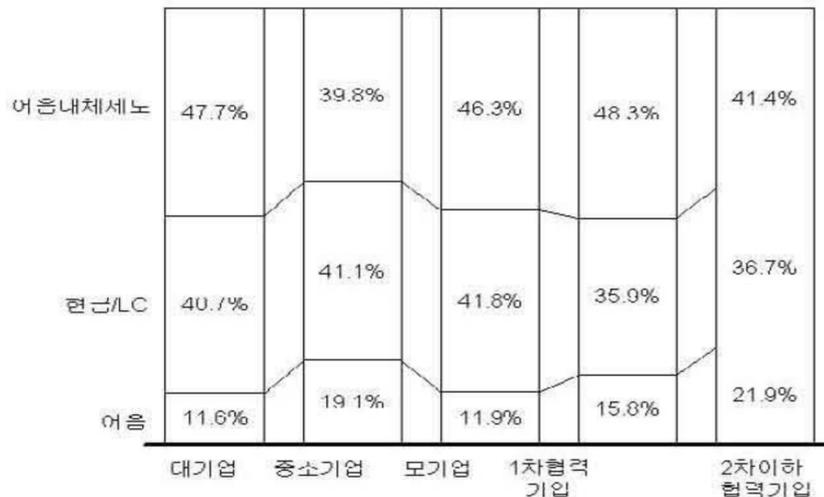
< 위탁기업의 연도별 결제방법 비율 추이 >

(단위 : %)

년도	어음	현금성결제			계
		현금, L/C	어음대체제도	계	
04년도	17.4	39.0	43.6	82.6	100
05년도	6.2	41.2	52.6	93.9	100
06년도	12.1	40.8	47.1	87.9	100

* 어음대체제도 :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 중소기업은 자금어려움으로 어음결제비중이 높은(19%) 반면,
 - 대기기업은 현금결제보다 지급기한(60일) 초과시에도 금융 부담이 없는 어음대체결제를 보다 선호
 - * 어음대체결제의 경우 지급기일 60일 초과시에도 할인료 미지급



➡ 중소기업은 현금과 어음대체제도를 비슷하게 선호

➡ 중소기업도 어음대체제도 (39.8%)를 더 선호하지만 어음(19.1%)의 비중도 높음

□ 납품대금 결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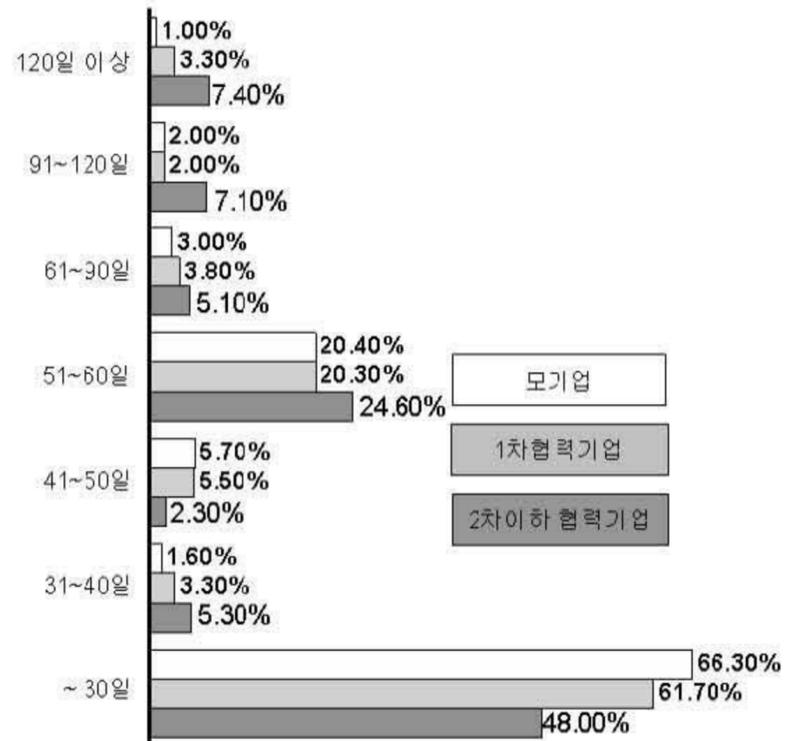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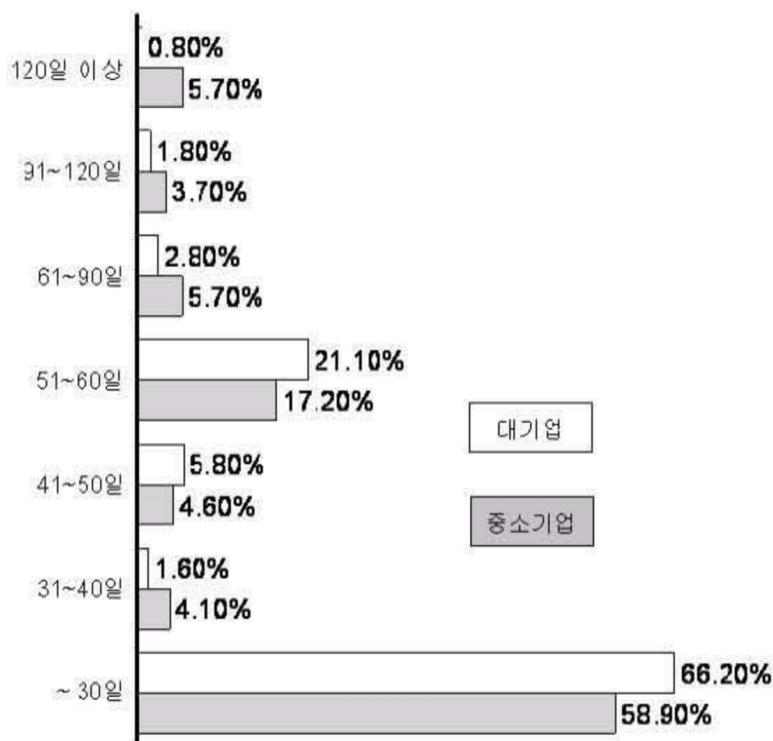
-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60일 초과 결제비율은 05년에 비해 감소세로 전환
 - 이는 60일을 초과한 어음대체결제 비율 감소에 기인

< 위탁기업의 연도별 납품대금 결제기간별 추이 >

(단위 : %)

구분	60일 이내	60일 초과			계
		61~90	91~120	120일 이상	
'04년도	89.3	6.4	2.6	1.7	10.7
'05년도	79.6	11.9	8.2	0.3	20.4
'06년도	93.8	3.0	1.9	1.3	6.2

- 기업규모가 작고 수급단계가 낮은 기업일수록 납품대금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한 결제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수급단계가 높은 위탁기업의 결제지연이 하위단계로 연계되어 자금결제가 연쇄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 모기업, 1차 협력기업의 51~60일 이내 결제비율이 20%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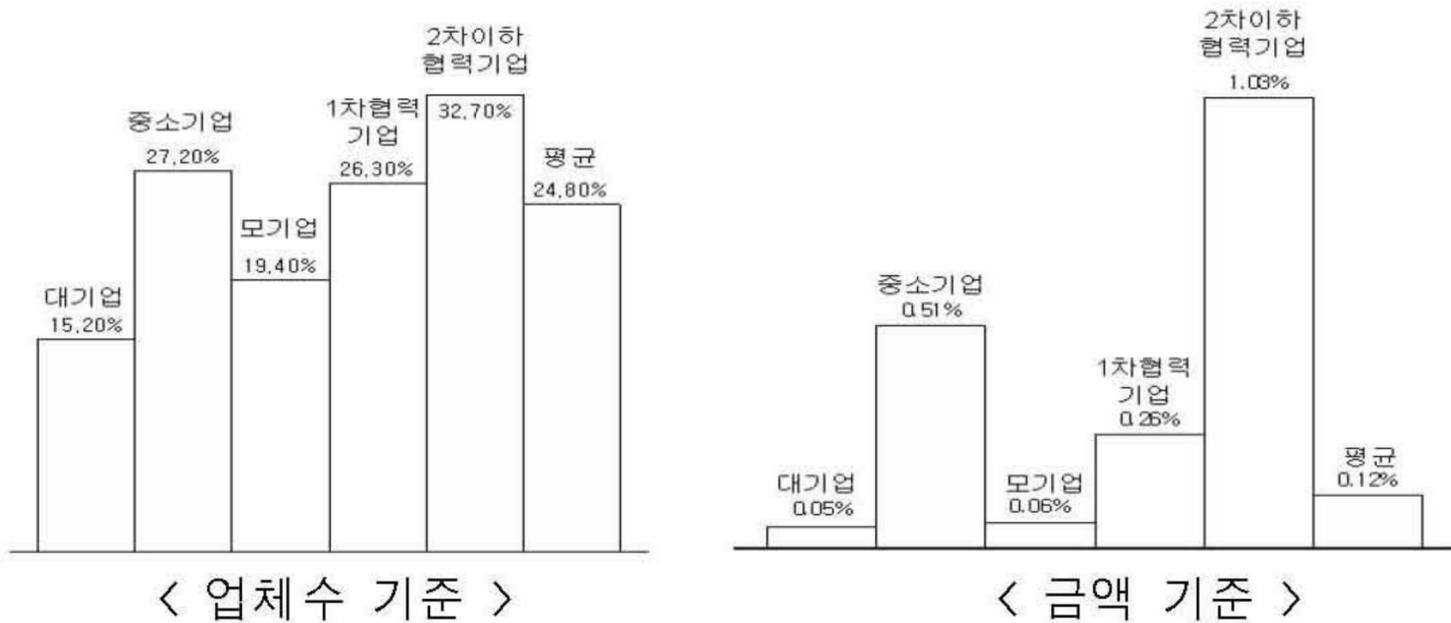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

< 수급단계별 >

② 위탁기업의 법규사항 준수 여부

① 납품대금 관련사항

- 기업규모가 작고, 수급단계가 낮을수록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업체의 비율 및 미지급 금액이 증가
 - * 미지급금액 있는 기업비율(%) : 대기업(19.4) → 1차(26.3) → 2차(32.7)
- 이는 하위 수급단계로 갈수록 위탁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납품대금 관련 위반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조사대상업체수 (거래금액)	미지급업체수		미지급금액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규모별 구분	대기업	375 (20,105,000)	57	15.2	10,168	0.05
	중소기업	1,451 (3,434,600)	395	27.2	17,486	0.51
단계별 구분	모기업	664 (18,928,410)	129	19.4	12,068	0.06
	1차협력	908 (4,160,190)	239	26.3	10,829	0.26
	2차이하 협력	257 (451,000)	84	32.7	4,757	1.03
계	1,826 (23,530,600)	452	24.8	27,654	0.12	

* 조사대상기업(2,581개사) 중 다른 기업에 위탁한 실적이 있는 1,826개사 조사

② 위탁기업 준수사항

* 위탁기업 준수사항 조사항목(상생법 제21조 ~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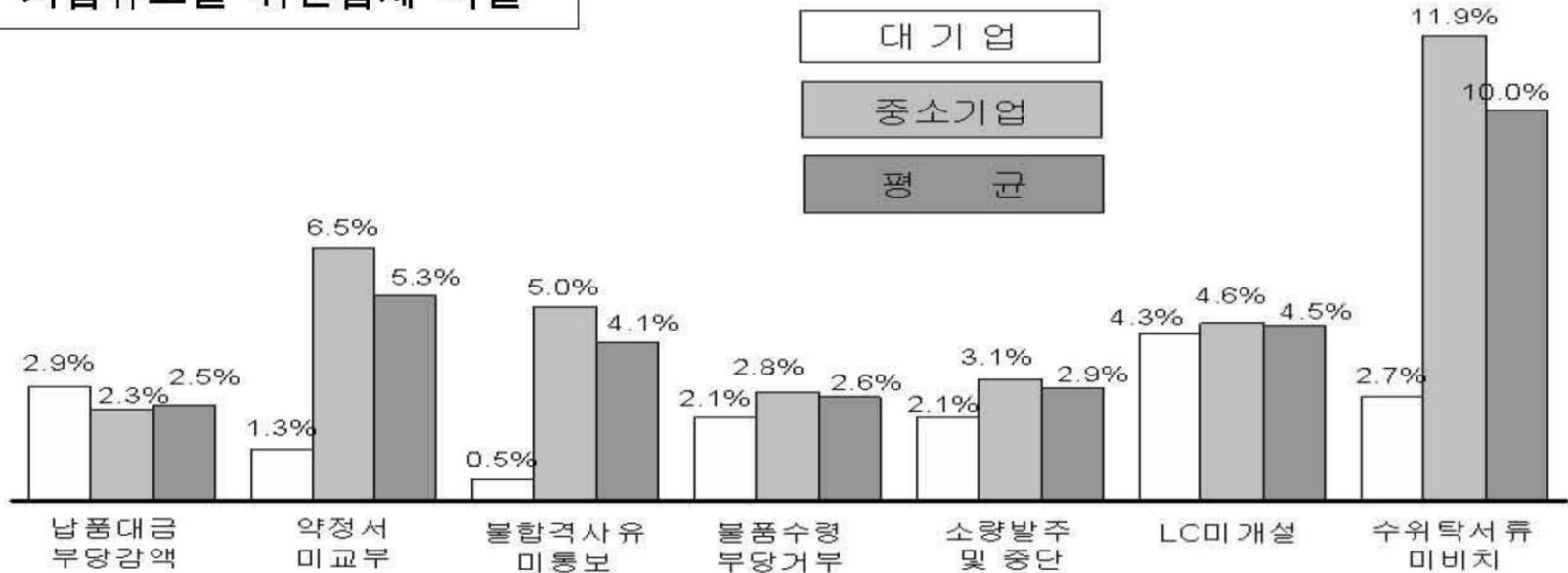
- 약정서 미교부, 불합리한 납품검사,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감액, 지정물품 강매, 물품개발 의뢰 후 발주기피 등 13개 항목

○ 기업규모별 위반현황

- 대기업은 협력중소기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문에서 위반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 중소기업은 약정서 교부, 검사결과 미통보 등 사무처리 분야에서 위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사무관련 규정 : 약정서 교부, 검사결과 통보, 관련 서류 비치(3년간) 등

기업규모별 위반업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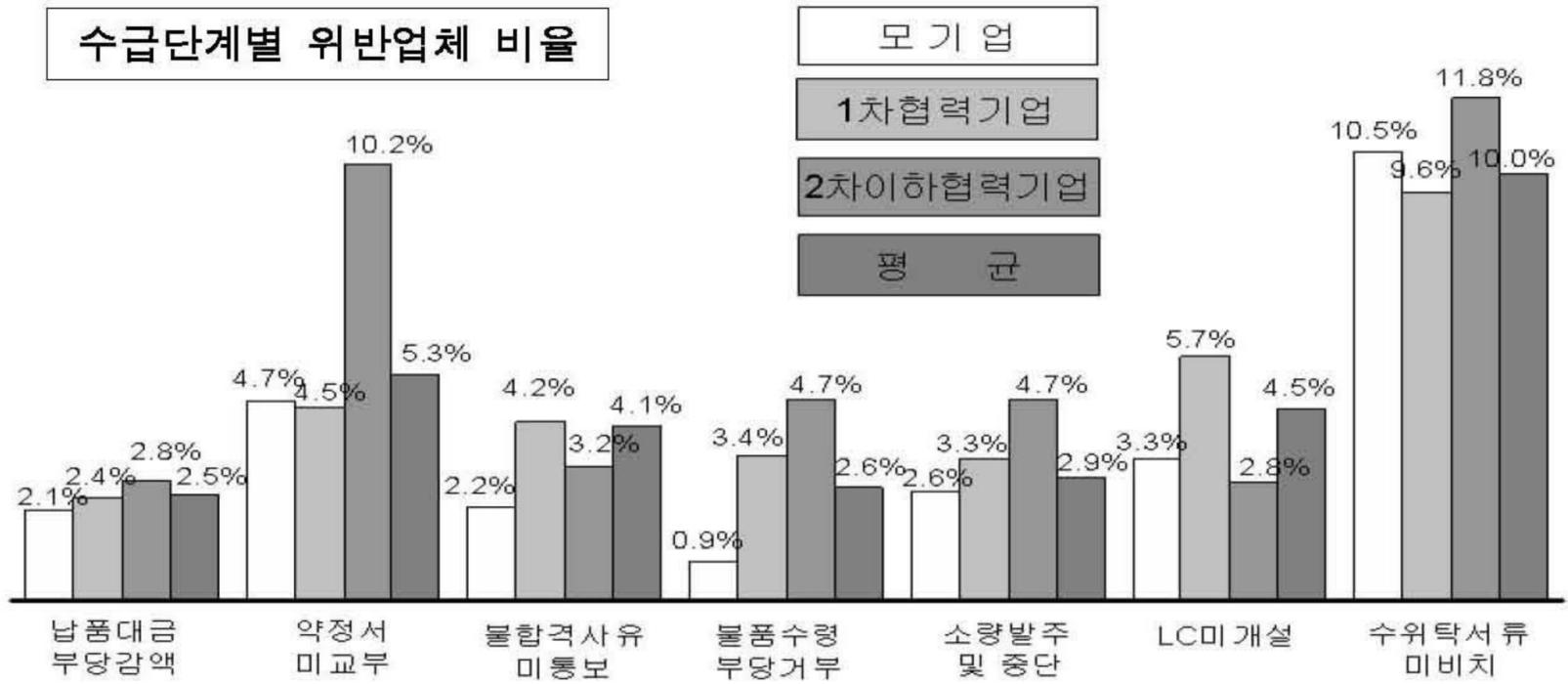


○ 수급단계별 위반현황

- 모기업은 협력기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서 미교부 (4.7%), 소량발주 및 중단(2.6%), 납품대금 부당감액(2.1%) 등의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위탁기업이 약정서 미교부 → 추가 요구 → 손실전가를 관행화함으로써 협력기업 납품단가가 인하되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정적 효과 발생

- 수급단계가 낮을수록 약정서 미교부(10.2%), 불합격사유 미통보(4.2%), LC미개설(5.7%) 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기타 물품수령증 미교부(1.64%), 특정물품 구매요구(0.77%) 등도 있었으나 위반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붙임 2 참조)



3) 납품단가 관련 조사결과

□ 위탁기업의 원가계산자료 요구현황

- 위탁기업 중 28.8%가 납품단가 결정과 관련, 협력기업에 대해 원가 계산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 대기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대기업 33.6%, 중소기업 27.3%)

< 원가계산자료 요구 목적 >

요구 목적	대기업	중소기업	모기업	1차협력	2차이하 협력
판매관리비	10%	11%	9%	11%	9%
경상비용 자료	10%	10%	10%	10%	10%
기술개발 자료	6%	6%	6%	6%	7%
제조경비	25%	24%	26%	23%	23%
노무비	23%	23%	23%	23%	23%
원재료 구입기	26%	26%	27%	26%	28%

- ➔ 원가계산자료의 요구 목적으로 원재료구입가, 제조경비, 노무비의 확인이 주 목적
- ➔ 기타 경영기밀에 속하는 기술자료, 판매관리비 등의 확인을 위한 경우도 있었음

□ 납품단가 결정방법

- 납품단가 결정방법은 ‘수탁기업과 협의 결정’, ‘물가상승률 고려’, ‘원가자료 검토 후 결정’의 순으로 응답
- 대기업은 ‘원가자료 검토 후 결정’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마진을 고려, 일률 결정’을 보다 선호

〈 납품단가 결정 방법 〉

물가상승률 고려	27%	25%	27%	24%	27%
일률적 마진 고려	8%	11%	10%	9%	13%
최저가 낙찰 후 원가계산자료 검토	15%	11%	12%	11%	9%
상호 협의	40%	41%	41%	40%	41%
입찰가격대로	11%	13%	10%	15%	10%
	대기업	중소기업	모기업	1차협력	2차이하 협력

➔ 대기업은 최저가 낙찰 후 원가계산 자료를 추가 검토하여 결정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1차 협력사는 입찰가격대로, 2차 협력사는 종전 단가에서 마진 고려, 일률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협력기업에 대한 마진허용율

- 대기업의 62.4%는 협력기업에 대해 표준 제조원가* 대비 마진을 1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5% 이상 설정하고 있는 기업은 9.1%에 불과

* 표준제조원가 : 위탁기업이 부품의 제조원가(원재료+노무비+제조경비 등)를 자체 산정한 기준으로 단가 결정의 기초로 활용

- 협력기업은 대기업이 설정한 표준원가와 실제 제조단가의 차이를 감안, 15~20% 내외의 마진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06년도 자동차부품 단가변동 조사결과, 협력기업은 04년 이후 제조단가와 비교하여 희망 적정마진 수준을 15% 내외로 응답

- 위탁기업의 비현실적인 표준원가에 기초한 납품단가 및 마진 설정을 애로요인으로 지적(수탁기업 현장조사 결과)

〈 위탁기업의 표준원가 대비 마진허용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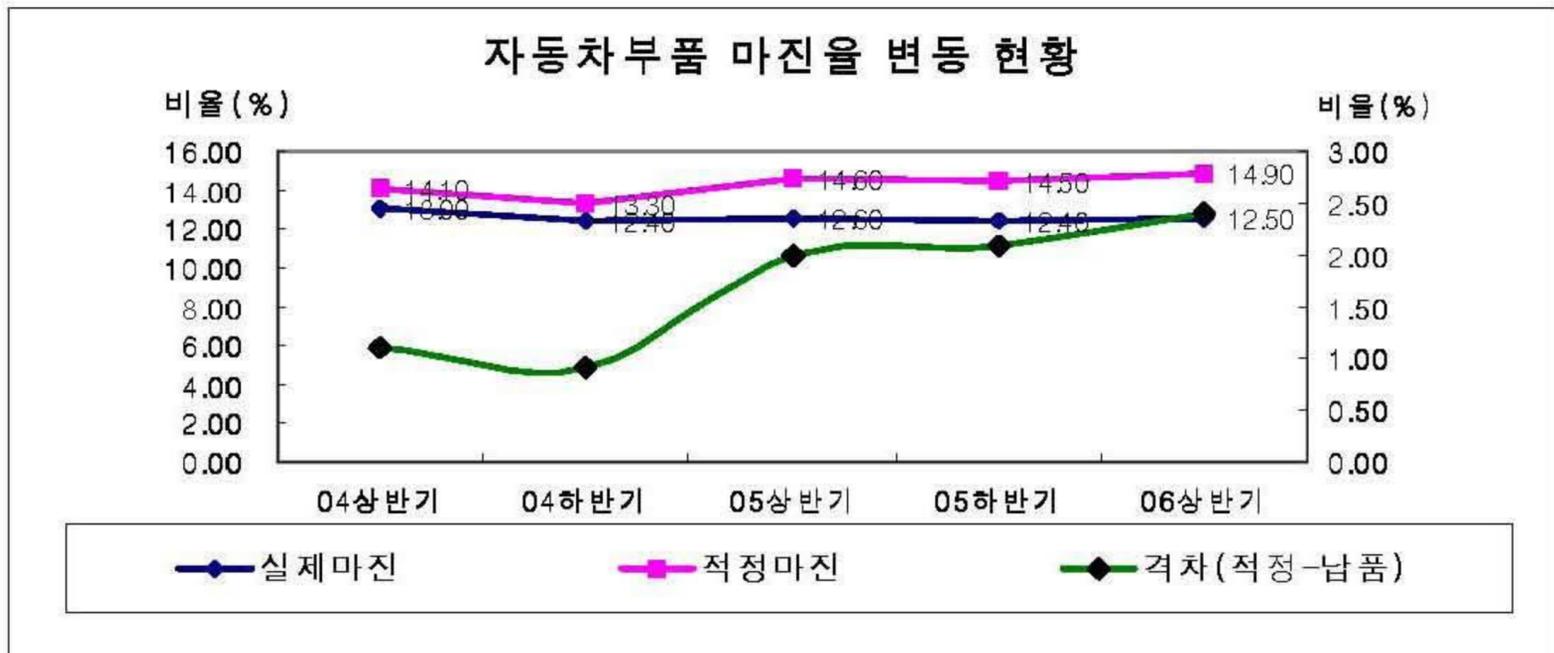
15% 이상	9.1	8.3	9.3	7.1	11.0
15% 미만	28.5	29.5	34.9	25.4	28.4
10% 미만	26.4	26.6	26.8	26.0	28.0
7.5% 미만	19.7	19.0	16.6	20.9	19.3
5% 미만	13.1	6.4	9.8	16.4	11.0
2.5% 미만	3.2	3.4	2.6	4.2	2.4
	대기업	중소기업	모기업	1차협력	2차이하 협력

- ➔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수급단계별로는 모기업 및 2차이하 협력기업이 마진허용율을 높게 설정해 주는 것으로 조사
- ➔ 소수이지만 마진허용율을 5%미만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음

□ 연도별 납품단가 변동현황(자동차·전자부품의 경우)

①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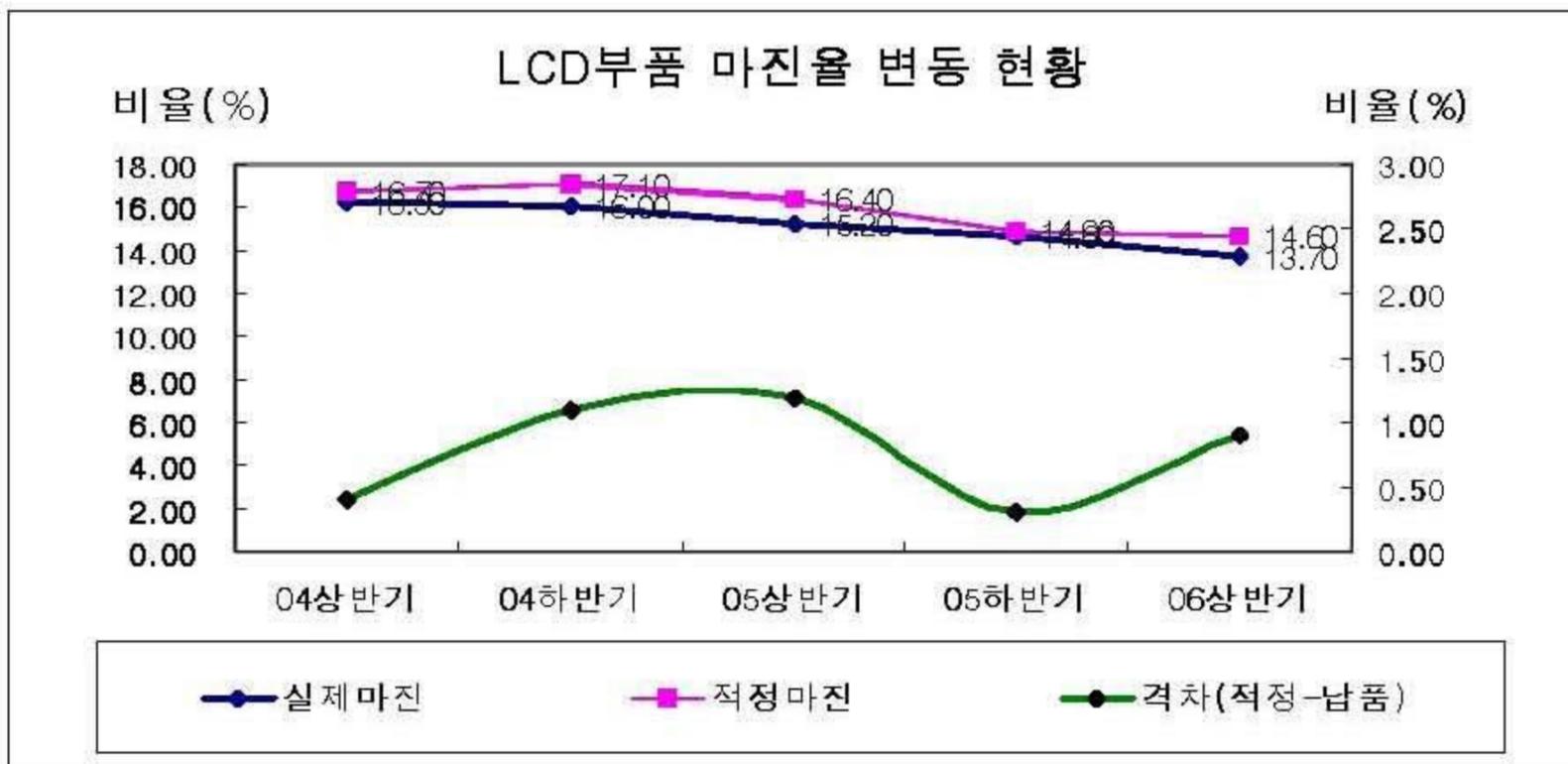
- 납품 중소기업은 희망 납품단가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적정마진 수준을 약 14.1% ~ 14.9%로 응답
- 그러나 실제 납품단가에서 제조원가를 제외한 실제마진은 12.5% ~ 13%로서, 적정마진과 격차가 04년 이후 확대 추세
- * 적정마진과 실제마진 격차(%) : (04상)1.1→(04하)0.9→(05상)2.0→(05하)2.1→(06상)2.4



- 협력기업의 적정단가-납품단가 비율(납품단가 결정시 모기업이 협력기업의 희망단가를 반영하는 비율)도 모기업별로 차이가 큼
 - 일부 완성차업체(R사, G사)는 협력기업에 적정단가를 보장해 주는 반면, 일부 업체(H사, K사)는 단가를 지속 인하
 - * 완성차업체별 적정단가-납품단가 비율 격차(최고-최저, %p)
 - (04상) 1.2 → (04하) 1.5 → (05상) 2.1 → (05하) 2.2 → (06상) 2.9

② 전자 부품(TFT LCD 관련)

- LCD 부품기업의 실제마진과 적정마진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1%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
 - * 적정마진-실제마진 격차(%): (04상)0.4→(04하)1.1→(05상)1.2→(05하)0.3→(06상)0.9
 - 납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
- 주요 모기업별 협력기업의 적정단가-납품단가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LG필립스의 경우 최근 크게 하락
 - 이는 최근 신규투자(과주공장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 * LG필립스LCD 협력기업의 적정단가 대비 납품단가 비율(%)
 - (04상) 98.2 → (04하) 99.2 → (05상) 99.4 → (05하) 100 → (06상) 96.9



□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실태

-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원료(원유, 원석 등) 가격하락 시보다 상승 시에 가격변동분을 더 빨리 반영
 - * 원료가격 변동시 1개월 이내 원자재가격에 반영 : 상승시 28.2%, 하락시 17.1%
- 조사응답 중소기업(45개사)의 53.3%는 원료가격 상승폭에 비해 대기업의 원자재가격 상승이 과도하다고 응답

< 원자재 공급업체의 원료가격 변동분 반영방법(중소기업 설문) >

품 목	원료가격 변동 수준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원료가격 변동 수준 이상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원료가격 변동 수준 이하로 원자재가격변동	기타	계
백색 봉투	-	4	-	-	4
PE관	2	2	-	-	4
상자류	2	2	-	-	4
자동차부품(FRP)	2	-	1	1	4
아스팔트	-	3	1	1	5
PVC관	2	3	-	-	5
케이블	2	2	-	1	5
방음판	3	1	-	-	4
가로등주	2	3	-	-	5
강관	-	4	1	-	5
합계	15(33.3%)	24(53.3%)	3(6.7%)	3(6.7%)	45

- 조사응답 중소기업의 63.4%는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변동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조사품목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마진율이 낮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큰 것에 기인
- 원자재가격 변동의 납품단가 반영은 대부분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상승·하락시 모두 반영폭은 크지 않았음
 - 원자재가격은 월단위로 변경되나 납품단가는 단가계약 등에 따라 1분기 이상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 등락이 적기에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기인

< 참고 > : 05년 - 06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

□ 06년도 실태조사의 특징

- 05년 위탁 모기업 위주(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조사에서 모기업 외에 2, 3차 협력기업까지 조사 대상기업 확대
 - * 조사기업 : (05)1,016 → (06)2,581(위탁 960, 수탁 1,621)
- 조사내용 강화
 - 05년 조사 : 납품대금 결제 조건 위주
 - 06년 조사 : 부당한 단가결정, 약정서 교부 등 불공정행위 전반, 대기업 협력기업(자동차전자)의 납품단가 변동현황, 원자재가격의 납품단가 반영현황

□ 05년 - 06년 실태조사 결과 비교(매출액 300억원이상 기업 기준)

- 현금성결제(현금, 어음대체 제도) 비중 : 05년 대비 6%p 감소
 - 어음대체결제 비율 감소에 기인
 - * 현금성결제 비율(%) : (03) 72.8 → (04) 82.6 → (05) 93.9 → (06) 87.9
 - * 어음대체결제 비율(%) : (03) 38.5 → (04) 43.6 → (05) 52.6 → (06) 47.1
- 납품대금 60일 초과 결제비율 : 05년 대비 14.2%p 감소
 -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비율 감소에 기인
 - * 납품대금 60일 초과 결제비율(%) : (03) 16.4 → (04) 10.7 → (05) 20.4 → (06) 6.2
 - * 60일 초과어음대체결제 비율 추이(%) : (03) 17.0 → (04) 13.2 → (05) 35.3 → (06) 9.5
- 납품대금 결제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비율:
05년 대비 업체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금액비율은 증가
 - * 납품대금 미지급 비율
 - 업체 기준(%) : (03) 30.6 → (04) 16.9 → (05) 24.2 → (06) 16.7
 - 금액 기준(%) : (03) 0.044 → (04) 0.0102 → (05) 0.0107 → (06) 0.045

※ 2005년 조사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조사함에 따라 표본선정, 조사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일부 조사결과가 추세치에서 벗어나 있음

III. 개선과제 및 조치계획

1] 실태조사 관련 개선과제

□ 조사대상 및 조사방식 개선

- 조사항목 추가 : 납품대금 총 회수기간(어음, 어음대체결제 등)
- 조사대상
 - 상생법 상 실태조사 및 개선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기업은 위탁기업 조사에서 제외
 -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쟁발생 기업은 우선적으로 포함 조사
- 조사방법
 - 납품대금 결제부분은 위탁기업만 조사하고, 기타 준수사항 조사는 수탁기업 1차 조사 → 위탁기업 확인 순서로 진행
- 조사방식
 - 인터넷조사 편의를 위해 애로상담창구(Help Desk) 운영
 - 진실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대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교육 및 홍보 강화
 - * 인센티브(안) : 성실 조사협조기업 차년도 조사면제, 기념품 제공 등
 - 협력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지방청별 사전 설명회 개최
- 지방청별 실태조사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필요
 - * 07년 조사계획 수립 후 지방청 조사담당자 워크숍 개최(07년 1.4분기)

□ 타 기관 실태조사와 중복운영 방지

- 중앙회, 연구기관 등 타 기관의 조사와 연계·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 조사기업의 민원 해소
- 차년도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강화

② 향후 조치계획

□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

- 요구대상 업체 : 미지급금(납품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이 있거나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대기업 및 중기업
 - 미지급금이 있는 기업 : 총 327개사(붙임자료 3 참조)
 - 납품대금 이외 위반기업 : 총 441개사(붙임자료 3 참조)
 - * 소기업의 경우 상생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요구대상에서 제외
- 요구내용 : 미지급금 지급 및 기타 불공정행위 개선
 - 우리청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 공표
 - * 납품대금 이외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반업체의 경우 '07년 실태조사 시 포함하여 개선여부 재조사
-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한 각 지방청을 통해 조치(07. 1월중)

□ 공정/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조치

- 공정/불공정거래기업 명단을 작성·DB화하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신용정보기관에 통보(07.1월중)
 - * 공정거래 우수기업 : 3,000만원 이상 수위탁거래가 있고 미지급금이 없으며, 기타 불공정행위가 없는 기업
 - * 불공정거래 기업 : 미지급금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 또는 기타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기업

- 불공정거래기업은 '07년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재조사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감점 조치
- 우수기업은 '07년 실태조사 시 제외하고 각종 정부포상 우대

□ **관련 제도개선 추진(07.2월중) : 상생법 개정 등**

-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할인료 부과근거 마련
- 위탁기업이 단가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
- 불공정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명령제」 도입
- 상습 불공정기업에 대해 중기청장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 실태조사 관련 고시, 지침 마련, 법규해석 및 사례집 발간 등

□ **중소기업 및 1·2차 이하 협력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별도대책 마련 : 07년 상반기중**

- 정기 실태조사에 중소기업간 거래를 확대·포함하고, 인터넷 서면조사 외에 애로신고에 의한 직권조사 강화
- 공정한 납품거래 관련 인센티브 도입 확대
 - 중소기업간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공정거래 우수기업 실태조사 면제, 정부지원 시 우대 등
- 관련법령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기업 대상으로 「교육명령제」 도입·운영
 - 상생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07년 중 각 교육기관(중앙회, 중진공연수원 등)에 교육프로그램 마련